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사전안내 도입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69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0856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사전안내 도입(안 제24조의3 신설)	3
※ 참고자료	10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856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

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사전안내 도입(안 제24조의3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업무 종사자가 법령에 따라 3년 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검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검 대상자에게 수검의무와 수검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3(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사전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의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통지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현황정보 미등록 운수종사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은 현행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²⁾.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는데, 신규검사는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 할 때, 특별검사는 중상사고를 야기하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일 때, 자격유지검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가 3년(70세 미만) 또는 매년(70세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³⁾.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 개인택시), 특수여객자동차(장래 참여 및 시체 운송 차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 이에 해당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해당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⁴⁾.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고령 운수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검 대상자에게 수검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전국 약 14만 명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됨. (참고1. 참조)

【 버스 및 택시 고령 운수종사자 현황(2024년말 기준) 】

(단위: 명)

구 분	전체 운수종사자	고령 운수종사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계	전체대비(%)
버스	142,877	18,922	8,662	27,584	19.3
택시	239,450	62,812	51,108	113,920	47.6
계	382,327	81,734	59,770	141,504	37.0

자료 : 국토교통부

최근 3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자격유지검사 수검 대상자 중 매년 15% 이상이 수검기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격유지검사 수검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검 대상	100,950	125,290	132,842
수검기한 초과자	17,027	20,943	20,725
수검기한 초과자 비율	16.9%	16.7%	15.6%

자료 : 국토교통부

【 고령 운수종사자 연도별 사고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체 사고(건)	40,108	37,801	37,788	39,346	39,384
고령 사고(건)	7,440	7,580	8,912	10,176	10,992
고령 비중	18.6%	20.1%	23.6%	25.9%	27.9%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자격유지검사가 연령(생년월일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지고, 직전 검사의 적합 판정일로부터 수검기준일이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고령 운수종사자가 수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고,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⁵⁾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나 알림서비스 신청자 비율이 85% 미만으로 제한적임.(참고2. 참조)

이에 개정안과 같이 자격유지검사 수검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경우 고령 운수종사자의 수검 편의가 증진되고 수검률 제고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에도 효과적인 제도적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법률에 직접 ‘자격유지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유지검사’는 법률에 규정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한 종류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로서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술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규정을 두되 사전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체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택시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체계의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 】

구 분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⁶⁾
대상자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의 운수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특수검사,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 검사	수검대상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수검주기	3년(70세 미만), 1년(70세 이상)	
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행정규칙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⁷⁾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

문 의 처
02)6788-5584

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격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7) 검사 항목, 방법, 측정내용, 판정기준, 검사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

참고 1

사업용자동차 고령운전자 현황(2024년말 기준)

○ 버스

(단위 : 명, 세)

구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세 이상	합계	평균 연령	전체 종사자
시내·시외 (농어촌포함)	6,708	1,020	57	5	0	0	7,790	67.2	89,173
마을버스	2,583	1,293	260	17	2	0	4,155	69.0	9,953
고속버스	6	0	0	0	0	0	6	66.2	1,980
전세버스	9,414	4,679	1,114	109	6	0	15,322	69.1	40,220
특수여객	211	70	27	3	0	0	311	68.7	1,551
합계	18,922	7,062	1,458	134	8	0	27,584	68.5	142,877
연령대별 비중	68.6	25.6	5.29	0.49	0.03	-	100	-	-

○ 택시

(단위 : 명, 세)

구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세 이상	합계	평균 연령	전체 종사자
개인택시	46,607	30,100	10,189	1,620	95	5	88,616	69.9	165,081
법인택시	16,205	7,190	1,711	189	8	1	25,304	68.9	74,369
합계	62,812	37,290	11,900	1,809	103	6	113,920	69.7	239,450
연령대별 비중	55.14	32.73	10.45	1.59	0.09	0.01	100	-	-

○ 화물

(단위 : 명, 세)

구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세 이상	합계	평균 연령	전체 종사자
일반화물	15,998	4,211	614	62	6	0	20,891	67.9	209,123
개별화물	9,829	3,751	771	82	7	0	14,440	68.6	72,974
용달화물	17,812	8,314	2,493	363	27	3	29,012	69.2	150,315
합계	43,639	16,276	3,878	507	40	3	64,343	68.7	432,412
연령대별 비중	67.82	25.3	6.03	0.79	0.06	-	100	-	-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 2

자격유지검사 사전통지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수검대상	95,192	65,318	79,451	97,067	104,552
	신청인원	71,005	51,500	65,226	79,337	87,950
	비율	74.6%	78.8%	82.1%	81.7%	84.1%
버스	수검대상	32,808	19,623	20,630	22,106	24,300
	신청인원	23,881	15,363	16,635	17,331	20,149
	비율	72.8%	78.3%	80.6%	78.4%	82.9%
택시	수검대상	43,929	30,537	39,291	47,942	48,193
	신청인원	33,847	24,329	32,782	40,026	40,737
	비율	77.0%	79.7%	83.4%	83.5%	84.5%
화물	수검대상	18,455	15,158	19,530	27,019	32,059
	신청인원	13,277	11,808	15,809	21,980	27,064
	비율	71.9%	77.9%	80.9%	81.4%	84.4%

자료 : 국토교통부